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입주자모집공고 [정정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2024.2.29. 통계청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발표 및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870호(2024.03.05.)에 따라, 2024.2.29. 입주자모집공고한 본 단지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14P) → 변경 후 입주자모집공고(14P)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16~17P) → 변경 후 입주자모집공고(16~17P)

■ 입주자모집공고문 14p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변경 전)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기준(3.31억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입주자모집공고문 14p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변경 후)

공급유형			구분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신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기준소득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입주자모집공고문 16~17p 생애최초 특별공급「※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변경 전)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인 가구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입주자모집공고문 16~17p 생애최초 특별공급「※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변경 후)

공급유형		구분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입주자모집공고

※ 2024.02.29.(목) 공고한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정정내용</th></tr>
<tr><td>정정 전
(5p)</td><td>■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특별공급 현장접수처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td></tr>
<tr><td>정정 후
(5p)</td><td>■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특별공급 현장접수처 방문접수(10:00~13: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td></tr>
<tr><td>정정 전
(24~25p)</td><td>

신청일정 및 장소

<table>
<tr><th>구분</th><th>신청대상자</th><th>신청일시</th><th>신청방법</th><th>신청장소</th></tr>
<tr><td>특별공급</td><td>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td><td>2024.03.13(수)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주택전시관 특별공급 현장접수처 :
10:00~14:00)</td><td rowspan="3">•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td><td>•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주택전시관 특별공급 현장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25</td></tr>
<tr><td rowspan="2">일반공급</td><td>1순위</td><td>2024.03.14(목) 09:00~17:30</td><td rowspan="2">•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td></tr>
<tr><td>2순위</td><td>2024.03.15(금) 09:00~17:30</td></tr>
</tabl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특별공급 현장접수처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td></tr>
<tr><td>정정 후
(24~25p)</td><td>

신청일정 및 장소

<table>
<tr><th>구분</th><th>신청대상자</th><th>신청일시</th><th>신청방법</th><th>신청장소</th></tr>
<tr><td>특별공급</td><td>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td><td>2024.03.13(수)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주택전시관 특별공급 현장접수처 :
10:00~13:00)</td><td rowspan="3">•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td><td>•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주택전시관 특별공급 현장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25</td></tr>
<tr><td rowspan="2">일반공급</td><td>1순위</td><td>2024.03.14(목) 09:00~17:30</td><td rowspan="2">•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td></tr>
<tr><td>2순위</td><td>2024.03.15(금) 09:00~17:30</td></tr>
</tabl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특별공급 현장접수처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3:00**)

</td></tr>
</table>

■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의 주택전시관은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https://www.dlcon-apt.co.kr)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dlcon-apt.co.kr)을 통해 분양일정 안내, 청약 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는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dlcon-apt.co.kr)을 통한 공급주택형별 평면도 확인 후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실물 유니트를 보지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물 유니트(59A, 84A)는 2024.03.09. 부터 관람 가능(예정)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2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안양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

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또는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O	O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특별공급 현장접수처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 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특별공급 현장접수처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에 공개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조정대상지역 안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 10년의 범위 내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공급질서 교란 금지)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법」제101조(벌칙)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제65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동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1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 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3월 13일(수)	3월 14일(목)	3월 15일(금)	3월 21일(목)	3월 22일(금) ~ 3월 26일(화)	4월 3일(수) ~ 4월 5일(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 (10:00 ~ 16:00)	주택전시관 방문 계약 (10:00 ~ 16:00)
장 소	▪ 주택전시관 특별공급 현장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주택전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25)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스마트폰앱	- 스마트폰앱	- 스마트폰앱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접수된 서류는 계약과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특별공급 현장접수처 방문접수(10:00~13: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주택과 - 7074호(2024.02.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33-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지상 20층 6개동 총 458세대 중 일반분양 458세대
[특별공급 186세대(일반[기관추천] 35세대, 다자녀가구 40세대, 신혼부부 69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생애최초 3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 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4000081	01	059.8496A	59A	59.8496	20.9630	80.8126	54.3980	135.2106	34.8606	189	18	18	34	5	17	92	97	12
		02	074.9708A	74A	74.9708	26.2734	101.2442	68.1419	169.3861	43.6683	27	2	2	4	0	2	10	17	2
		03	074.9619B	74B	74.9619	26.4563	101.4182	68.1338	169.5520	43.6631	18	1	1	3	0	1	6	12	1
		04	079.9836A	79A	79.9836	27.7177	107.7013	72.6981	180.3994	46.5881	37	3	3	6	1	3	16	21	2
		05	084.8352A	84A	84.8352	28.4779	113.3131	77.1077	190.4208	49.4141	55	5	5	9	1	4	24	31	3
		06	084.8352B	84B	84.8352	28.4779	113.3131	77.1077	190.4208	49.4141	17	1	1	3	0	1	6	11	1
		07	084.9599C	84C	84.9599	29.1183	114.0782	77.2211	191.2993	49.4867	56	5	5	10	1	5	26	30	3
		08	098.9750A	98A	98.9750	33.2428	132.2178	89.9596	222.1774	57.6501	59	-	5	-	1	-	6	53	3
	합 계										458	35	40	69	9	33	186	272	27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전용면적)	059.8496A	074.9708A	074.9619B	079.9836A	084.8352A	084.8352B	084.9599C	098.9750A
약식표기	59A	74A	74B	79A	84A	84B	84C	98A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됨)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세대, 원)

주택형(약식표기)	해당 동·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1회(2%)	2회(5%)	3회(5%)	4회(8%)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2024.08.16.	2025.03.17.	2025.10.15.	2026.04.15.	입주예정일
59A	101동 1호,2호,3호,5호 102동 4호 103동 3호 106동 1호,2호	1층	5	372,500,000	291,500,000	-	664,000,000	66,400,000	13,280,000	33,200,000	33,200,000	53,120,000	464,800,000
		2층	8	382,600,000	299,400,000	-	682,000,000	68,200,000	13,640,000	34,100,000	34,100,000	54,560,000	477,400,000
		3층	8	388,800,000	304,200,000	-	693,000,000	69,300,000	13,860,000	34,650,000	34,650,000	55,440,000	485,100,000
		4층	8	393,200,000	307,800,000	-	701,000,000	70,100,000	14,020,000	35,050,000	35,050,000	56,080,000	490,700,000
		5층	8	397,200,000	310,800,000	-	708,000,000	70,800,000	14,160,000	35,400,000	35,400,000	56,640,000	495,600,000
		6 ~ 10층	32	401,100,000	313,900,000	-	715,000,000	71,500,000	14,300,000	35,750,000	35,750,000	57,200,000	500,500,000
		11 ~ 20층	56	409,500,000	320,500,000	-	730,000,000	73,000,000	14,600,000	36,500,000	36,500,000	58,400,000	511,000,000
	104동 3호,4호	2층	2	375,300,000	293,700,000	-	669,000,000	66,900,000	13,380,000	33,450,000	33,450,000	53,520,000	468,300,000
		3층	2	381,500,000	298,500,000	-	680,000,000	68,000,000	13,600,000	34,000,000	34,000,000	54,400,000	476,000,000
		4층	2	385,400,000	301,600,000	-	687,000,000	68,700,000	13,740,000	34,350,000	34,350,000	54,960,000	480,900,000
		5층	2	389,300,000	304,700,000	-	694,000,000	69,400,000	13,880,000	34,700,000	34,700,000	55,520,000	485,800,000
		6 ~ 10층	10	393,200,000	307,800,000	-	701,000,000	70,100,000	14,020,000	35,050,000	35,050,000	56,080,000	490,700,000
		11 ~ 15층	10	401,100,000	313,900,000	-	715,000,000	71,500,000	14,300,000	35,750,000	35,750,000	57,200,000	500,500,000
		16 ~ 20층	10	409,500,000	320,500,000	-	730,000,000	73,000,000	14,600,000	36,500,000	36,500,000	58,400,000	511,000,000
	105동 3호,4호	2층	2	375,300,000	293,700,000	-	669,000,000	66,900,000	13,380,000	33,450,000	33,450,000	53,520,000	468,300,000
		3층	2	381,500,000	298,500,000	-	680,000,000	68,000,000	13,600,000	34,000,000	34,000,000	54,400,000	476,000,000
		4층	2	385,400,000	301,600,000	-	687,000,000	68,700,000	13,740,000	34,350,000	34,350,000	54,960,000	480,900,000
		5층	2	389,300,000	304,700,000	-	694,000,000	69,400,000	13,880,000	34,700,000	34,700,000	55,520,000	485,800,000
		6 ~ 10층	10	393,200,000	307,800,000	-	701,000,000	70,100,000	14,020,000	35,050,000	35,050,000	56,080,000	490,700,000
		11 ~ 16층	8	401,100,000	313,900,000	-	715,000,000	71,500,000	14,300,000	35,750,000	35,750,000	57,200,000	500,500,000
74A	104동 5호 105동 5호	1층	2	450,500,000	352,500,000	-	803,000,000	80,300,000	16,060,000	40,150,000	40,150,000	64,240,000	562,100,000
		2층	2	462,800,000	362,200,000	-	825,000,000	82,500,000	16,500,000	41,250,000	41,250,000	66,000,000	577,500,000
		3층	2	470,100,000	367,900,000	-	838,000,000	83,800,000	16,760,000	41,900,000	41,900,000	67,040,000	586,600,000

		4층	2	475,200,000	371,800,000	-	847,000,000	84,700,000	16,940,000	42,350,000	42,350,000	67,760,000	592,900,000
		5층	2	480,200,000	375,800,000	-	856,000,000	85,600,000	17,120,000	42,800,000	42,800,000	68,480,000	599,200,000
		6 ~ 10층	9	485,200,000	379,800,000	-	865,000,000	86,500,000	17,300,000	43,250,000	43,250,000	69,200,000	605,500,000
		11 ~ 15층	5	494,800,000	387,200,000	-	882,000,000	88,200,000	17,640,000	44,100,000	44,100,000	70,560,000	617,400,000
		16 ~ 18층	3	504,900,000	395,100,000	-	900,000,000	90,000,000	18,000,000	45,000,000	45,000,000	72,000,000	630,000,000
74B	104동 2호	1층	1	453,300,000	354,700,000	-	808,000,000	80,800,000	16,160,000	40,400,000	40,400,000	64,640,000	565,600,000
		2층	1	466,200,000	364,800,000	-	831,000,000	83,100,000	16,620,000	41,550,000	41,550,000	66,480,000	581,700,000
		3층	1	473,500,000	370,500,000	-	844,000,000	84,400,000	16,880,000	42,200,000	42,200,000	67,520,000	590,800,000
		4층	1	478,500,000	374,500,000	-	853,000,000	85,300,000	17,060,000	42,650,000	42,650,000	68,240,000	597,100,000
		5층	1	483,600,000	378,400,000	-	862,000,000	86,200,000	17,240,000	43,100,000	43,100,000	68,960,000	603,400,000
		6 ~ 10층	5	488,100,000	381,900,000	-	870,000,000	87,000,000	17,400,000	43,500,000	43,500,000	69,600,000	609,000,000
		11 ~ 15층	5	498,200,000	389,800,000	-	888,000,000	88,800,000	17,760,000	44,400,000	44,400,000	71,040,000	621,600,000
		16 ~ 18층	3	504,900,000	395,100,000	-	900,000,000	90,000,000	18,000,000	45,000,000	45,000,000	72,000,000	630,000,000
79A	101동 4호 102동 3호	1층	1	481,900,000	377,100,000	-	859,000,000	85,900,000	17,180,000	42,950,000	42,950,000	68,720,000	601,300,000
		2층	1	495,300,000	387,700,000	-	883,000,000	88,300,000	17,660,000	44,150,000	44,150,000	70,640,000	618,100,000
		3층	2	503,200,000	393,800,000	-	897,000,000	89,700,000	17,940,000	44,850,000	44,850,000	71,760,000	627,900,000
		4층	2	508,800,000	398,200,000	-	907,000,000	90,700,000	18,140,000	45,350,000	45,350,000	72,560,000	634,900,000
		5층	2	513,900,000	402,100,000	-	916,000,000	91,600,000	18,320,000	45,800,000	45,800,000	73,280,000	641,200,000
		6 ~ 10층	10	518,900,000	406,100,000	-	925,000,000	92,500,000	18,500,000	46,250,000	46,250,000	74,000,000	647,500,000
		11 ~ 20층	19	529,600,000	414,400,000	-	944,000,000	94,400,000	18,880,000	47,200,000	47,200,000	75,520,000	660,800,000
84A	102동 5호 103동 2호	2층	2	518,300,000	405,700,000	-	924,000,000	92,400,000	18,480,000	46,200,000	46,200,000	73,920,000	646,800,000
		3층	2	526,800,000	412,200,000	-	939,000,000	93,900,000	18,780,000	46,950,000	46,950,000	75,120,000	657,300,000
		4층	2	532,400,000	416,600,000	-	949,000,000	94,900,000	18,980,000	47,450,000	47,450,000	75,920,000	664,300,000
		5층	2	538,000,000	421,000,000	-	959,000,000	95,900,000	19,180,000	47,950,000	47,950,000	76,720,000	671,300,000
		6 ~ 10층	10	543,600,000	425,400,000	-	969,000,000	96,900,000	19,380,000	48,450,000	48,450,000	77,520,000	678,300,000
		11 ~ 20층	20	554,800,000	434,200,000	-	989,000,000	98,900,000	19,780,000	49,450,000	49,450,000	79,120,000	692,300,000
	105동 1호	1층	1	494,800,000	387,200,000	-	882,000,000	88,200,000	17,640,000	44,100,000	44,100,000	70,560,000	617,400,000
		2층	1	508,200,000	397,800,000	-	906,000,000	90,600,000	18,120,000	45,300,000	45,300,000	72,480,000	634,200,000
		3층	1	516,700,000	404,300,000	-	921,000,000	92,100,000	18,420,000	46,050,000	46,050,000	73,680,000	644,700,000
		4층	1	521,700,000	408,300,000	-	930,000,000	93,000,000	18,600,000	46,500,000	46,500,000	74,400,000	651,000,000
		5층	1	527,300,000	412,700,000	-	940,000,000	94,000,000	18,800,000	47,000,000	47,000,000	75,200,000	658,000,000
		6 ~ 10층	5	532,900,000	417,100,000	-	950,000,000	95,000,000	19,000,000	47,500,000	47,500,000	76,000,000	665,000,000
		11 ~ 17층	7	543,600,000	425,400,000	-	969,000,000	96,900,000	19,380,000	48,450,000	48,450,000	77,520,000	678,300,000
84B	102동 6호	4층	1	532,400,000	416,600,000	-	949,000,000	94,900,000	18,980,000	47,450,000	47,450,000	75,920,000	664,300,000
		5층	1	538,000,000	421,000,000	-	959,000,000	95,900,000	19,180,000	47,950,000	47,950,000	76,720,000	671,300,000
		6 ~ 10층	5	543,600,000	425,400,000	-	969,000,000	96,900,000	19,380,000	48,450,000	48,450,000	77,520,000	678,300,000
		11 ~ 20층	10	554,800,000	434,200,000	-	989,000,000	98,900,000	19,780,000	49,450,000	49,450,000	79,120,000	692,300,000
84C	103동 1호,4호	1층	1	503,200,000	393,800,000	-	897,000,000	89,700,000	17,940,000	44,850,000	44,850,000	71,760,000	627,900,000
		2층	2	516,700,000	404,300,000	-	921,000,000	92,100,000	18,420,000	46,050,000	46,050,000	73,680,000	644,700,000
		3층	2	525,100,000	410,900,000	-	936,000,000	93,600,000	18,720,000	46,800,000	46,800,000	74,880,000	655,200,000
		4층	2	530,700,000	415,300,000	-	946,000,000	94,600,000	18,920,000	47,300,000	47,300,000	75,680,000	662,200,000
		5층	2	536,300,000	419,700,000	-	956,000,000	95,600,000	19,120,000	47,800,000	47,800,000	76,480,000	669,200,000
		6 ~ 10층	10	541,900,000	424,100,000	-	966,000,000	96,600,000	19,320,000	48,300,000	48,300,000	77,280,000	676,200,000
		11 ~ 20층	20	552,600,000	432,400,000	-	985,000,000	98,500,000	19,700,000	49,250,000	49,250,000	78,800,000	689,500,000
	105동 2호	1층	1	493,100,000	385,900,000	-	879,000,000	87,900,000	17,580,000	43,950,000	43,950,000	70,320,000	615,300,000
		2층	1	506,600,000	396,400,000	-	903,000,000	90,300,000	18,060,000	45,150,000	45,150,000	72,240,000	632,100,000
		3층	1	515,000,000	403,000,000	-	918,000,000	91,800,000	18,360,000	45,900,000	45,900,000	73,440,000	642,600,000
		4층	1	520,000,000	407,000,000	-	927,000,000	92,700,000	18,540,000	46,350,000	46,350,000	74,160,000	648,900,000

		5층	1	525,600,000	411,400,000	-	937,000,000	93,700,000	18,740,000	46,850,000	46,850,000	74,960,000	655,900,000
		6 ~ 10층	5	531,200,000	415,800,000	-	947,000,000	94,700,000	18,940,000	47,350,000	47,350,000	75,760,000	662,900,000
		11 ~ 17층	7	541,900,000	424,100,000	-	966,000,000	96,600,000	19,320,000	48,300,000	48,300,000	77,280,000	676,200,000
98A	102동 1호,2호 104동 1호	1층	2	550,230,000	430,700,000	43,070,000	1,024,000,000	102,400,000	20,480,000	51,200,000	51,200,000	81,920,000	716,800,000
		2층	3	565,920,000	442,800,000	44,280,000	1,053,000,000	105,300,000	21,060,000	52,650,000	52,650,000	84,240,000	737,100,000
		3층	3	574,440,000	449,600,000	44,960,000	1,069,000,000	106,900,000	21,380,000	53,450,000	53,450,000	85,520,000	748,300,000
		4층	3	580,940,000	454,600,000	45,460,000	1,081,000,000	108,100,000	21,620,000	54,050,000	54,050,000	86,480,000	756,700,000
		5층	3	586,770,000	459,300,000	45,930,000	1,092,000,000	109,200,000	21,840,000	54,600,000	54,600,000	87,360,000	764,400,000
		6 ~ 10층	15	592,710,000	463,900,000	46,390,000	1,103,000,000	110,300,000	22,060,000	55,150,000	55,150,000	88,240,000	772,100,000
		11 ~ 20층	30	605,040,000	473,600,000	47,360,000	1,126,000,000	112,600,000	22,520,000	56,300,000	56,300,000	90,080,000	788,200,000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주거전용 및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 및 중도금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는 중도금 대출 전액을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에는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이 불가함)
※ 동별 주택형이 혼재되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동호수 배치도 및 단지 배치도 등을 통해 라인별 주택형, 분양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및 본인 착오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주택전시관 및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A	74A	74B	79A	84A	84B	84C	98A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서울	2	-	-	1	1	-	-	-	4
		경기	2	1	-	1	1	-	1	-	6
		인천	2	-	-	-	-	1	-	-	3
	국가유공자		3	-	-	-	1	-	1	-	5
	장기복무 제대군인		3	-	-	-	1	-	1	-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	1	-	1	-	1	-	6
	중소기업 근로자		3	1	-	1	-	-	1	-	6
	소계		18	2	1	3	5	1	5	0	3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9	1	1	2	3	1	3	3	23
	수도권(서울, 인천) 거주자 (50%)		9	1	-	1	2	-	2	2	17
	소계		18	2	1	3	5	1	5	5	40
신혼부부 특별공급			34	4	3	6	9	3	10	-	6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	-	1	1	-	1	1	9
생애최초 특별공급			17	2	1	3	4	1	5	-	33
합 계			92	10	6	16	24	6	26	6	18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 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부지 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안양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상호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현장접수 시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자격요건 미달 및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청약 신청자의 기재 사항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신청자격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미청약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당첨 및 계약불가]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 표시되지 않는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 수 → 청약자 연령(생년월일) 높은순]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안양시 및 경기도 거주자(경쟁 시 안양시 거주자 우선)에게 우선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낙첨자 포함)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경기도 우선 공급세대수에서 낙첨된 안양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대상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안양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69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td></tr>
<tr><td>신청자격</td><td>•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득서류 확인 시점
<table>
<tr><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
<tr><td>2024.02.29.</td><td>(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td></tr>
</table>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기준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
•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td><td>◆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td></tr>
</table></td></tr>
</table>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9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표]**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3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td></tr>
<tr><td>신청자격</td><td>•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table>
<tr><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
<tr><td>2024.02.29.</td><td>(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td></tr>
</table>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3">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본요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 될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60㎡초과 85㎡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안양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의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 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 거주신청자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 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택전시관 특별공급 현장접수처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주택전시관 특별공급 현장접수처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 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서류제출 및 동·호수 배정, 계약 등) 일정은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dlcon-apt.co.kr) 게시 또는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여부 및 부적격소명 등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물량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후순위의 예비입주자의 가점 초과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후순위의 예비입주자의 가점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03.13(수)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주택전시관 특별공급 현장접수처 : 10:00~13: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주택전시관 특별공급 현장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25
일반공급	1순위	2024.03.14(목)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4.03.15(금)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

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특별공급 현장접수처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3: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 또는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민영주택)] <u>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u>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일정 및 확인

<table>
<tr><th>구분</th><th>신청대상자</th><th>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th></tr>
<tr><td>특별공급</td><td>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td><td rowspan="3">• 일시: 2024.03.21(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td></tr>
<tr><td rowspan="2">일반공급</td><td>1순위</td></tr>
<tr><td>2순위</td></tr>
</table>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 특별공급 접수처(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dlcon-apt.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4.03.21 (목) ~ 2024.03.30 (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4.03.21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비고
정당당첨자	특별공급	2024.03.22.(금) ~ 2024.03.26.(화) (10:00 ~ 16:00)	•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주택전시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25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사이버 주택전시관** - https://www.dlcon-apt.co.kr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일반공급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은 위 일정에 맞춰 사전방문예약의 방법으로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 예정이나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할 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검증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어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주택전시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주택전시관 방문 청약 시 필요)
	O		서약서(무주택/계약자)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 • 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
		O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청약자(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해당 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
낙찰 증빙서류	매각허가결정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임차주택, 원본제출
채권자 확인서류	· 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①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②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O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특별공급	O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자녀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에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미등재된 경우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O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자녀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 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O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소득증빙서류] <표2>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O	비사업자 확인각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O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신고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O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O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O		소득세 입증서류 (납부내역증명서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소득증빙서류] <표3> 참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 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O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소득증빙서류] <표2>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O	비사업자 확인각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O	사실 증명서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산정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 대원 전원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직계존속의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필수 제출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O		인감증명서	청약자	• 본인발급용에 한함 / 용도 : 위임용(본인발급용)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O		위임장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표2>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 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전년도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상기 방식 역시 불가하다면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①,② 해당 직장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소득금액 증명원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의 해당	①,②,③ 해당 직장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에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신청서 및 확인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직인날인)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 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국민연금의 경우 공고일 이전 가입만 인정 ※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공고일 이전 신고만 인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법인 결산서 ③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①,② 세무서 / 등기소 ③ 해당 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③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① 해당 직장 / 세무서 ②, ③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① 세무서,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무직자, 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금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직인날인) -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폐업 증명서	① 접수장소 (당사 주택전시관) ② 세무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 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출산휴가, 휴직했던 분은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직인날인)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 소득증빙서류 중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의 경우「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제9조(소득기준 심사방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록증 제출로서 증빙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변경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표3>

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및 위촉(재직)증명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①,② 세무서 ③,④ 해당직장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직인날인)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자산입증 제출서류(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기준 초과 추첨제 신청자) <표4>

구분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서류 <표5>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table>
<tr><td rowspan="5"></td><td>○</td><td></td><td rowspan="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td><td>본인</td><td>•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td></tr>
<tr><td></td><td>○</td><td>피부양
직계존속</td><td>•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td></tr>
<tr><td></td><td>○</td><td>피부양
직계비속</td><td>•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td></tr>
<tr><td></td><td>○</td><td>복무확인서</td><td>본인</td><td>•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td></tr>
<tr><td></td><td>○</td><td>전세피해 확인서류</td><td>청약자(본인)
또는 세대원</td><td>•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table>
<tr><th>해당 서류</th><th>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th></tr>
<tr><td>임대차계약서</td><td>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td></tr>
<tr><td>낙찰 증빙서류</td><td>매각허가결정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td></tr>
<tr><td>등기사항증명서</td><td>해당 임차주택, 원본제출</td></tr>
<tr><td>채권자 확인서류</td><td>· 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①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②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td></tr>
</table></td></tr>
<tr><td rowspan="3">해외근무자
(단신부임)</td><td>O</td><td></td><td>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td><td>본인</td><td>•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td></tr>
<tr><td>O</td><td></td><td>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td><td>세대원 및
미성년자녀</td><td>•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td></tr>
<tr><td></td><td>O</td><td>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td><td>본인 및
세대원</td><td>•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td></tr>
<tr><td rowspan="5">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td><td>○</td><td></td><td>가점산정기준표</td><td>-</td><td>•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td></tr>
<tr><td></td><td>○</td><td>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td><td rowspan="2">피부양
직계존속</td><td>•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td></tr>
<tr><td></td><td>○</td><td>가족관계증명서(상세)</td><td>•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td></tr>
<tr><td></td><td>○</td><td>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td><td rowspan="2">피부양
직계비속</td><td>•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td></tr>
<tr><td></td><td>○</td><td>가족관계증명서(상세)</td><td>•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td></tr>
</table>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혼인관계 확인 여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부양가족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피부양인 전원 제출 ※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계약처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Ⅶ. 계약 체결 일정 및 유의사항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체결 기간	계약 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4.04.03.(수) ~ 2024.04.05.(금) (10:00 ~ 16:00)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주택전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25)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3호 계약자 → '1030703홍길동')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하나은행	411-910016-27204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 상기 입금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 시 별도 안내함)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계약 체결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O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O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O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본인	• 해당 세대의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①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②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O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 계약시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O		위임장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O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약 체결 구비서류 중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와 관련하여 인지세 납부 방법 등은 추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을 재 공고 후 인터넷 청약방법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당사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주택전시관에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택전시관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 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금리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다주택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주택전시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Ⅷ.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발코니 확장 공사비

주택형(타입)	59A	74A	74B	79A	84A	84B	84C	98A
발코니 확장 공사비	무 상 제 공							

▣ **발코니 확장 공사 관련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사이버주택전시관 또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동급 또는 동급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위로 인한 결로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세대분전반내 차단기 수량이 감소하며, 등기구의 수량, 램프 및 배선기구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발코니 확장옵션 미적용 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시행위탁자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 등 관련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서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관련 법령상 발코니가 하향식 피난구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Ⅱ)

- 추가선택품목(Ⅱ) 공급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Ⅱ)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Ⅱ)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Ⅱ)은 발코니 비확장 시 설치공간 및 확장제공품목의 차이로 인해 발코니 확장형 계약세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제조사		설치위치	판매가격	비고
59A	LG전자	일반형	거실 + 침실1	3,400,000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6,100,000	
		프리미엄형	거실 + 침실1	3,600,000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6,300,000	
74A	LG전자	일반형	거실 + 침실1	3,600,000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6,500,000	
		프리미엄형	거실 + 침실1	3,800,000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6,800,000	
74B	LG전자	일반형	거실 + 침실1	3,600,000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6,500,000	
		프리미엄형	거실 + 침실1	3,800,000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6,800,000	
79A	LG전자	일반형	거실 + 침실1	3,600,000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6,500,000	
		프리미엄형	거실 + 침실1	3,800,000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6,800,000	

84A	LG전자	일반형	거실 + 침실1	3,600,000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6,500,000	
		프리미엄형	거실 + 침실1	3,800,000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6,800,000	
84B	LG전자	일반형	거실 + 침실1	3,600,000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6,500,000	
		프리미엄형	거실 + 침실1	3,800,000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6,800,000	
84C	LG전자	일반형	거실 + 침실1	3,600,000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6,500,000	
		프리미엄형	거실 + 침실1	3,800,000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6,800,000	
98A	LG전자	일반형	거실 + 주방 + 침실1	5,300,000	
			거실 + 주방 + 침실1+ 침실2+ 침실3	8,000,000	
			거실 + 주방 + 침실1+ 침실2+ 침실3 + 알파공간	9,400,000	
		프리미엄형	거실 + 주방 + 침실1	5,500,000	
			거실 + 주방 + 침실1+ 침실2+ 침실3	8,300,000	
			거실 + 주방 + 침실1+ 침실2+ 침실3 + 알파공간	9,700,000	

- 시스템 에어컨은 일반형과 프리미엄형 제품 중 선택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격은 거실 냉매배관, 침실1 냉매배관 및 콘센트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며, 옵션 선택 시 거실(스탠드형) 냉매배관, 침실1(벽걸이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일반 에어컨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벽걸이형, 스탠드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부위의 우물천장(거실) 크기가 변경될 수 있고, 실외기 공간 및 발코니에 응축수 드레인 및 냉매배관 또는 배관용 슬리브가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전시관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 리모콘(실내기 1대당 1대)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 시 실내기의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일 경우 층간 단열재 설치로 인한 에어컨 설치공간(천장 깊이) 확보 불가로 아래층 세대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일부 세대에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옵션 미선택 세대에 설치되는 냉매박스(거실, 침실1, 실외기실)와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거실,침실1 2개소) 및 에어컨용 콘센트(침실1)는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판매가격에는 기본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되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실내기 및 실외기 모델은 주택형별, 가전사별,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 시 별도로 세부 안내 예정입니다.

▣ 붙박이 가구류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및 구성품		판매가격	비 고
오픈형 신발장	59A	현관	오픈형 신발장(오픈장 상부 LED조명+엔지니어드스톤 상판+신발살균기+퀵라인선반+신발청소기)	1,100,000	차감 : 기본제공 신발장 (내부 우산걸이 + 멀티랙)
	74A			1,100,000	
	74B			1,150,000	
	79A			1,400,000	
	84A			1,100,000	
	84B			1,100,000	
	84C			1,100,000	
	98A			1,100,000	
손빨래하부장	98A	발코니2	인조대리석(MMA) 상판 마감+하부장+손빨래싱크볼	800,000	
침실1 드레스룸 가구	59A	침실1	[선택1]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1,900,000	주택형별 택1
			[선택2]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2,800,000	
			[선택3]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C5 GMR 60))	3,900,000	
			[선택4]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C5 GMR 60))	4,800,000	
	74A	침실1 /드레스룸	[선택1]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 드레스룸 입구 벽패널 마감	2,100,000	
			[선택2]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4,800,000	
			[선택3]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C5 GMR 60))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6,800,000	
	74B	침실1 /드레스룸	[선택1]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2,800,000	
			[선택2]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3,700,000	
			[선택3]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C5 GMR 60)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4,800,000	
			[선택4]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C5 GMR 60)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5,700,000	
	79A	침실1 /드레스룸	[선택1]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 드레스룸 입구 벽패널 마감	2,100,000	
			[선택2]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3,700,000	
			[선택3]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C5 GMR 60))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5,700,000	
	84A	침실1 /드레스룸	[선택1]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스페이스월) + 드레스룸 입구 벽패널 마감	2,600,000	
			[선택2]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5,800,000	
			[선택3]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C5 GMR 60))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7,800,000	
	84B	침실1 /드레스룸	[선택1]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스페이스월) + 드레스룸 입구 벽패널 마감	2,600,000	
			[선택2]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5,800,000	
			[선택3]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C5 GMR 60))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7,800,000	
	84C	침실1 /드레스룸	[선택1]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 드레스룸 입구 벽패널 마감	2,250,000	
			[선택2]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 오픈형 선반장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4,300,000	
			[선택3]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C5 GMR 60)) + 오픈형 선반장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6,300,000	
	98A	침실1 /드레스룸	[선택1]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스페이스월) + 드레스룸 입구 벽패널 마감	2,600,000	
			[선택2]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 오픈형 선반장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5,600,000	
			[선택3]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C5 GMR 60)) + 오픈형 선반장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7,600,000	

침실2 붙박이장	59A	침실2	붙박이장(경량벽 포함)	1,050,000	가구 측면 경량벽 포함
	74A			1,100,000	
	74B			1,100,000	
	79A			1,100,000	
	84A			1,100,000	
	84B			1,100,000	
	84C			1,270,000	
	98A			1,270,000	
침실3 붙박이장	74A	침실3	붙박이장(경량벽 포함)	1,100,000	가구 측면 경량벽 포함
	74B			1,270,000	
	79A			1,100,000	
	84A			1,270,000	
	84B			1,270,000	
	84C			1,100,000	
	98A			1,270,000	

- 붙박이 가구(주방 포함) 옵션 선택 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붙박이 가구 옵션 미선택 시 해당부위는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붙박이장 규격은 평면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 옵션 선택 시 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 시 기본형 신발장에 설치되는 우산걸이 및 다용도렉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신발살균기, 신발청소기, 퀵라인 선반은 실 시공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신발장으로 설치되며, 오픈형 신발장 판매가격 산정 시 기본형 신발장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 시 판매가격은 상부 LED 조명, 신발살균기, 신발청소기의 전원공급 관련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 시 59A형은 거실 우물천장 옵션용 배전반과 하부 통신단자함이 신발장 내부에 설치되며, 해당 부분 수납 레이아웃이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 내 LED 조명은 현관 센서와 연동되어 현관 등기구와 같이 작동되며, 별도의 스위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침실1 드레스룸 가구 옵션 선택시 설치품목은 설치공간 및 설치위치의 차이로 주택형별로 상이합니다.
- 침실1 드레스룸 가구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벽패널 마감은 본 공사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시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아울러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가구에 가려지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침실1 드레스룸 가구 옵션 선택시 의류관리기를 추가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의류관리기 공간으로 제공되며, 해당부위는 가구 뒤판이 설치되지 않고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침실1 드레스룸 가구 옵션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에 설치되는 벽패널 마감은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 시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침실1 드레스룸 가구 옵션 선택 시 추가 선택이 가능한 의류관리기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가구패널 마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침실1 드레스룸 가구 옵션 선택 시 해당 타입 가구 설치부위(침실1/드레스룸) 창호의 커텐박스 크기(폭)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드레스룸 가구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화장대 크기는 설치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주택형별로 크기 및 설치 등기구 수량과 소비전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1 드레스룸 가구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화장대 크기는 설치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주택형별로 크기가 상이하며,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1 드레스룸 가구 옵션 선택 시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스위치, 콘센트, 배선기구, 다운라이트, 화재감지기 등)
- 침실1 드레스룸 가구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워크인 드레스룸(해당타입) 및 복도 팬트리(해당타입),주방 팬트리(해당타입) 내 시스템선반(스페이스월 포함)은 본 공사시 디자인 및 사양, 구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침실1 드레스룸 가구 옵션 선택 시 가구에 가려지는 벽체에 설치되는 통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침실2 / 침실3 붙박이장(59A 침실3 제외) 옵션 선택 시 가구 설치를 위한 경량벽체가 가구 측면에 설치되며, 가구 설치로 인한 공간협소로 인해 침실문 옆에 설치된 스위치 및 온도조절기, 콘센트가 가구 측면 경량벽체로 이동 설치됩니다.
- 붙박이 가구류의 디자인, 내부 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타입별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시스템 선반은 본 공사시 수납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2 손빨래 하부장 옵션(98A타입) 선택시 방우형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 워크인 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화재감지기가 추가로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 현관 중문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및 구성품		판매가격	비 고	
현관 중문	전주택형	현관	3연동슬라이딩 수동 중문(금속프레임 / 그레이 불투명 유리)	1,800,000	양방향 댐핑 포함 / 경량벽 삭제비용 차감	택1
	전주택형	현관	3연동슬라이딩 자동 중문(금속프레임 / 그레이 불투명 유리)	2,800,000	경량벽 삭제비용 차감	

- 현관 중문은 수동 또는 자동 3연동 슬라이딩 중문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시공 상 중문틀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설치시 압력차로 인하여 세대현관문 개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옵션 미선택 시 신발장 측면에 경량벽이 설치되며, 벽패널 또는 도배지, 천장지로 마감됩니다.
- 현관 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옵션 미선택 시 천장몰딩, 가구, 디딤판, 벽패널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신발장 측면이 경량벽으로 마감됩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중문 설치부위 신발장 케이싱 너비가 변경됩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설치유형에 상관없이 화재감지기가 추가로 설치되며, 자동중문 옵션 선택 시에는 추가로 전원공급 관련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현관 중문은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사이버주택전시관 또는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사양(제조사, 프레임 및 유리, 작동방식 등)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자동 슬라이딩 도어 옵션 선택 시 도어 스위치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및 구성품		판매가격	비 고	
거실 벽 시그니월	59A	거실	거실창 주변 벽면 + 거실1개면	730,000	기본제공 도배 마감(걸레받이 설치)과의 차인액 반영	
	74A			840,000		
	74B			700,000		
	79A			700,000		
	84A			780,000		
	84B			730,000		
	84C			780,000		
	98A			820,000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일 체형몰딩	59A	거실 /복도	세대 공용부(거실/복도)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210,000	차감 : 몰딩옵션 설치부위 기본제공 천장몰딩 추가 :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설치부위 천장보강 비용	
	74A			630,000		
	74B			400,000		
	79A			480,000		
	84A			540,000		
	84B			500,000		
	84C			540,000		
	98A			460,000		
단위세대 바닥마감	59A	전실	[선택1] 거실 + 주방 + 복도 + 침실1 + 침실2 + 침실3 (MISTY FLEX / 143mm)	800,000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택 1
			[선택2] 공용부 바닥 플렉스 스퀘어 마루(거실+주방+복도(스톤그레이)) + 침실 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침실1 + 침실2 + 침실3 (MISTY FLEX/143mm))	1,150,000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 추가 :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사이 금속 재료 분리대	
	74A		[선택1] 거실 + 주방 + 복도 + 침실1(드레스룸) + 침실2 + 침실3 (MISTY FLEX / 143mm)	1,050,000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택1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선택2] 공용부 바닥 플렉스 스퀘어 마루(거실+주방+복도(스톤그레이)) + 침실 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침실1(드레스룸) + 침실2 + 침실3 (MISTY FLEX/143mm))	1,500,000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 추가 :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사이 금속 재료 분리대	
	74B		[선택1] 거실 + 주방 + 복도 + 침실1(드레스룸) + 침실2 + 침실3 (MISTY FLEX / 143mm)	900,000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택1
			[선택2] 공용부 바닥 플렉스 스퀘어 마루(거실+주방+복도(스톤그레이)) + 침실 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침실1(드레스룸) + 침실2 + 침실3 (MISTY FLEX/143mm))	1,350,000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 추가 :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사이 금속 재료 분리대	
	79A		[선택1] 거실 + 주방 + 복도 + 침실1(드레스룸) + 침실2 + 침실3 (MISTY FLEX / 143mm)	950,000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택1
			[선택2] 공용부 바닥 플렉스 스퀘어 마루(거실+주방+복도(스톤그레이)) + 침실 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침실1(드레스룸) + 침실2 + 침실3 (MISTY FLEX/143mm))	1,400,000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 추가 :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사이 금속 재료 분리대	
	84A		[선택1] 거실 + 주방 + 복도 + 침실1(드레스룸) + 침실2 + 침실3 (MISTY FLEX / 143mm)	1,200,000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택1
			[선택2]공용부 바닥 플렉스 스퀘어 마루(거실+주방+복도(스톤그레이)) + 침실 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침실1(드레스룸) + 침실2 + 침실3 (MISTY FLEX/143mm))	1,750,000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 추가 :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사이 금속 재료 분리대	
	84B		[선택1] 거실 + 주방 + 복도 + 침실1(드레스룸) + 침실2 + 침실3 (MISTY FLEX / 143mm)	1,200,000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택1
			[선택2] 공용부 바닥 플렉스 스퀘어 마루(거실+주방+복도(스톤그레이)) + 침실 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침실1(드레스룸) + 침실2 + 침실3 (MISTY FLEX/143mm))	1,750,000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 추가 :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사이 금속 재료 분리대	
	84C		[선택1] 거실 + 주방 + 복도 + 침실1(드레스룸) + 침실2 + 침실3 + 복도팬트리 (MISTY FLEX / 143mm)	1,100,000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택1
			[선택2] 공용부 바닥 플렉스 스퀘어 마루(거실+주방+복도(스톤그레이)) + 복도팬트리 침실 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침실1(드레스룸) + 침실2 + 침실3 (MISTY FLEX/143mm))	1,650,000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 추가 :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사이 금속 재료 분리대	
	98A		[선택1] 거실 + 주방 + 복도 + 침실1(드레스룸) + 침실2 + 침실3 + 주방팬트리 + 알파공간 (MISTY FLEX / 143mm)	1,350,000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택1
			[선택2] 공용부 바닥 플렉스 스퀘어 마루(거실+주방+복도(스톤그레이)) + 주방팬트리 침실 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침실1(드레스룸) + 침실2 + 침실3 + 알파공간 (MISTY FLEX/143mm))	1,900,000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	

					추가 :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사이 금속 재료 분리대
발코니 /다용도실 탄성코트	59A	발코니/ 다용도실	발코니2 벽면 / 천장면 탄성코트 마감	520,000	발코니 / 다용도실 벽 및 천장면 기본제공 수성페인트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74A		발코니 벽면 / 천장면 탄성코트 마감	670,000	
	74B		다용도실 벽면 / 천장면 탄성코트 마감	750,000	
	79A		다용도실 벽면 / 천장면 탄성코트 마감	760,000	
	84A		발코니2 벽면 / 천장면 탄성코트 마감	520,000	
	84B		발코니2 벽면 / 천장면 탄성코트 마감	520,000	
	84C		발코니2 벽면 / 천장면 탄성코트 마감	630,000	
	98A		발코니2 벽면 / 천장면 탄성코트 마감	650,000	

- 전 주택형 주방벽 및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은 자재의 특성상 분절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고 이음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 시 색상 및 무늬가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상판과 주방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과는 본 공사시 자재 발주시기 차이로 인해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시 발코니2에 설치되는 손빨래 하부장(98A타입)은 마감재 옵션선택이 불가능하며, 인조대리석 상판(MMA)으로만 마감됩니다.
- 거실 창호주변 및 거실 뒤쪽 벽면에 시그니월 마감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 시 도배지(걸레받이 설치)로 시공됩니다.
- 거실벽 시그니월 선택 시 마감두께 변경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 세대(도배지 마감)에 비해 거실 내폭 실사용 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실 안목 치수가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주방 세라믹 패널은 나누기 및 패턴 연결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벽 시그니월 선택 시 패널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거실 및 해당타입 주방 또는 거실 복도 아트월 세라믹 패널 마감은 나누기 및 패턴 연결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거실 창호주변 및 뒷벽면 옵션인 시그니월 마감은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옵션 선택 시 해당 부위 천장에 설치되는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은 도장으로 마감되며, 자재 특성상 일반 몰딩(랩핑마감)과 이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 마감 또는 세대 공용부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및 침실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 마감옵션은 전체 실 일괄 선택만 가능하며, 옵션 미선택 시 기본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폭115mm)로 시공됩니다. 아울러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는 색상 및 무늬가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공용부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및 침실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 마감옵션 선택시 두 마루판 연결부위(실별 목창호 하단)에 금속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거실 및 주방 마감자재(시그니월, 세라믹 패널, 타일, 엔지니어드 스톤 등)의 나누기와 상세도 변경으로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통신수구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주방에는 가스 공급을 위한 설비가 설치되어, 주방가구 상판(엔지니어드 스톤) 및 쿡탑(가스 or 인덕션)의 종류와 상관없이 추후 사용성을 위해 가스 연결구가 타공되고 캡으로 마감됩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 ①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제조사 및 품명		판매가격	비 고
주방 스마트TV	전주택형	새로닉스	13" 음성인식 스마트 주방TV (STV-1331AI)	450,000	옵션 선택시 기본설치 주방TV의 차인액 반영

- 주방 스마트TV 옵션 선택 시 설치 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마트TV 옵션 선택 시 국선(집 전화) 일반 통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스마트TV 옵션 선택 시 음성인식 기능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인터넷 가입 후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주방TV 설치로 인해 창호 개폐, 가전제품/주방용품 배치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마트TV 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10'' 주방TV는 시공 및 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조명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및 구성품		판매가격	비 고
거실 우물천장 조명	59A	거실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3,400,000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74A			4,100,000	
	74B			3,200,000	

	79A			3,250,000	
	84A			3,950,000	
	84B			3,950,000	
	84C			4,500,000	
	98A			4,400,000	
침실 색온도디밍시스템	59A	침실	특화조명 +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침실1+침실2+침실3)	1,600,000	기본제공 침실등/스위치/온도조절기와의 차인액 반영
	74A			1,600,000	
	74B			1,600,000	
	79A			1,600,000	
	84A			1,600,000	
	84B			1,600,000	
	84C			1,600,000	
	98A		특화조명 +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침실1+침실2+침실3+알파공간)	2,050,000	기본제공 침실,알파공간등/스위치/온도조절기와의 차인액 반영
주방가구 상부장 조명	59A	주방	주방가구 상부장 LED 지판조명	440,000	전기배선 및 스위치 설치비용 포함
	74A			460,000	
	74B			450,000	
	79A			450,000	
	84A			410,000	
	84B			410,000	
	84C			490,000	
	98A			470,000	

- 거실 우물천장 조명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이 시트 패널로 마감되며, 우물 천장 내 직부등이 삭제되고 직간접 조명으로 설치됩니다. 설치되는 우물천장 직간접 조명은 상부 간접조명, 하부 직부형 조명으로 구성되며, 하부 직부형 조명은 디밍제어가 가능(색온도 조절은 불가) 합니다.
- 거실 우물천장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 시트 패널 마감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 세대(도배지 마감)와 우물천장 깊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옵션 선택 시 거실등 스위치 형태 및 작동 방식이 변경됩니다.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조명 옵션만 선택 시 입주 후 고객이 직부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를 고려하여, 예비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아울러, 옵션 미선택 세대는 예비 스위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옵션 선택 시 전원공급용 배전반이 추가로 설치되며(59A형-신발장 내부, 74A/74B/79A/84A/84B/84C/98A-현관팬트리), 설치위치에 따라 해당 부분 수납 레이아웃(신발장 내부인 경우 수납 레이아웃 및 현관 팬트리의 경우 시스템 선반 구성)이 변경되거나, 수납 공간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옵션 선택 시 판매가격은 기존 직부등 및 스위치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거실 우물천장 옵션 설치세대 천장 시트패널 마감은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직간접 조명은 본 공사 시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거실 우물천장 몰딩 디자인 및 규격(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조명은 라인조명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음새의 위치와 수량은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색온도 디밍시스템은 특화조명(주조명 밝기와 색온도 제어 및 테두리 간접조명)과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로 구성된 시스템이며, 추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거실에 설치되는 디밍시스템은 색온도 조절기능 없음)
- 침실 색온도 디밍시스템은 공사 특성 상 전체 침실 일괄 선택(해당 타입 알파공간 포함)만 가능(침실별 개별 선택 불가)합니다.
- 침실 색온도 디밍시스템 옵션 선택 시 난방 온도조절기가 통합된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가 설치되며, 디스플레이의 화면 구성 및 조작방식은 기능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색온도 디밍시스템 판매가격은 기존 침실의 직부등 및 스위치, 온도조절기 삭제 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침실 색온도 디밍시스템 옵션 선택 시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는 해당실의 조명과 난방을 음성으로 ON/OFF가 가능하며 별도의 제어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상부장 조명 옵션 선택 시 상부장에 별도 스위치(ON/OFF)가 설치되며, 조명용 배전반 설치로 인해 해당 부분 주방 상부장의 수납 레이아웃이 변경되거나 수납 공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부장 조명 옵션 선택시 가구지판에 조명설치로 인해 양개도어 상부장 세로보강목이 삭제됩니다. 아울러 선반처짐 방지를 위해 양개도어 상부장의 경우 선반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부장 조명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조명 및 스위치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상품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및 구성품		판매가격	비 고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 주택형	욕실1 + 욕실2	비데일체형 양변기	650,000	기본제공 공용욕실 : 투피스형 양변기 / 부부욕실 투피스형 양변기 +분리형비데 차인액 반영
욕실 조명특화	전 주택형	욕실1 + 욕실2	욕실장 간접조명 + 센서미등	500,000	기본제공 욕실 다운라이트(1개소)와의 차인액 반영
욕실 복합 환풍기	전 주택형	욕실1 + 욕실2	욕실 천장 복합환풍기 설치	920,000	기본제공 욕실 환기디퓨저 및 배기팬과의 차인액 반영 및 천장재 보강비용 포함

- 비데 일체형 양변기 및 욕실 조명특화, 복합환풍기 옵션은 욕실1 및 욕실2 동시 설치 옵션선택만 가능하며, 욕실별 개별 옵션선택이 불가합니다.
- 비데 일체형 양변기 및 복합 환풍기는 본 공사 시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데 일체형 양변기 옵션 미선택 시 욕실1은 투피스형 양변기, 욕실2는 투피스형 양변기/분리형 비데가 설치됩니다.
- 비데 일체형 양변기 컨트롤러는 옵션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센서 기능이 포함된 다운라이트가 욕실별로 1개소 설치되며, 센서 기능은 스위치 OFF시에만 심야 유도용 미등이 점등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욕실장 간접조명은 스위치를 통해서 제어하며 센서 기능은 없습니다.
- 욕실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판매가격은 기존 욕실의 다운라이트와 관련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복합 환풍기 옵션 미선택 시 욕실 안쪽에 배기 디퓨져 및 욕실 천정내부에 배기휀이 설치되며, 디퓨져 위치는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디퓨져와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판매가격에서 차감하였습니다. (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의 리모콘은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리모컨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 옵션 선택 시 판매가격은 전용회로와 관련된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복합 환풍기 옵션 선택 시 스위치와 연동되어 작동(ON/OFF)합니다. (기타 작동은 복합 환풍기 리모컨 사용)

▣ 창호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및 구성품		판매가격	비 고
외부창호 단열필름	59A	외부 창호	단열필름 시공(내창 유리1면)	1,870,000	단위세대 전체 외부창호 내창 유리1면 시공
	74A			2,350,000	
	74B			1,900,000	
	79A			1,980,000	
	84A			2,400,000	
	84B			2,400,000	
	84C			2,280,000	
	98A			2,900,000	

- 외부창호 단열필름 마감은 타입별 확장형 외부창호(이중창) 및 해당타입 발코니(단창) 전체 실내측 내창 유리1면에 시공되며, 실별 개별 옵션선택이 불가합니다.
- 외부창호 단열필름 마감은 시공부위 유리크기가 필름 장폭보다 클 경우 이어붙임으로 시공됩니다.
- 외부창호 단열필름은 야간에 실내 점등 시 무지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단열필름은 본 공사 시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제조사, 사양, 색상 등)될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Ⅲ)

- 추가선택품목(Ⅲ) 공급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Ⅲ)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Ⅲ)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Ⅲ)는 발코니 비확장 시 설치공간 및 확장제공품목의 차이로 인해 발코니 확장형 계약세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 ②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제조사	모델명	판매가격	비 고	
오브제 냉장고 2종세트	59A	LG전자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 키큰서랍장	6,800,000	오브제 냉장고 옵션 선택시 기본 냉장고장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74A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 키큰서랍장	6,800,000		
	74B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 키큰서랍장	6,800,000		
	79A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 키큰서랍장	6,800,000		
	84A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 팬트리장	7,300,000		
	84B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 팬트리장	7,300,000		
	84C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 키큰서랍장	6,800,000		
	98A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 키큰서랍장	7,000,000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	전주택형	LG전자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BEY3GBI)	1,000,000	차감 : 기본제공 SK매직 3구 가스쿡탑 추가 : 가스차단장치 추가 설치비용 반영	택1
			인덕션 3구 (BEI3GQBI)	1,200,000		
			인덕션 3구 (BEI3WWQLBI)	1,400,000		
식기세척기	전주택형	LG전자	식기세척기 12인용 (DIB22S)	1,200,000	차감 : 수납공간(여닫이 도어) 추가 : 콘센트	택1
			식기세척기 12인용 (DUB22SB2)	1,200,000		
전기오븐	59A	LG전자	광파오븐 (MZ941CLCAT)	780,000	차감 : 전자레인지장	택1
			전기오븐 (MZ385EBTA)	500,000		
	74A	LG전자	광파오븐 (MZ941CLCAT)	780,000		택1
			전기오븐 (MZ385EBTA)	500,000		
	74B	LG전자	광파오븐 (MZ941CLCAT)	780,000		택1
			전기오븐 (MZ385EBTA)	500,000		
	79A	LG전자	광파오븐 (MZ941CLCAT)	780,000		택1
			전기오븐 (MZ385EBTA)	500,000		
	84A	LG전자	광파오븐 (MZ941CLCAT)	780,000		택1
			전기오븐 (MZ385EBTA)	500,000		
	84B	LG전자	광파오븐 (MZ941CLCAT)	780,000		택1
			전기오븐 (MZ385EBTA)	500,000		
	84C	LG전자	광파오븐 (MZ941CLCAT)	780,000		택1
			전기오븐 (MZ385EBTA)	500,000		
	98A	LG전자	광파오븐 (MZ941CLCAT)	780,000		택1
			전기오븐 (MZ385EBTA)	500,000		

- 발코니 확장형 계약 시 주방가구(냉장고장 / 아일랜드장)가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에 한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기본형 주방가구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공간상 제약으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반형 김치냉장고 크기가 제한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일반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공간은 고객님이 소유하신 제품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냉장고의 돌출 정도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추가선택품목 구성이 상이하며, 공간상의 제약으로 일부 빌트인 품목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주방가구 구성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디자인, 내부 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실 시공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은 제품의 단종, 변경, 성능향상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브제 냉장고 옵션 선택 시 삭제되는 부위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해당품목 판매가격에서 차감하였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오브제 냉장고 옵션 선택 시 타입별로 키큰 서랍장 또는 팬트리장이 동시에 설치되며, 해당품목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또는 김치냉장고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오브제 가전은 B2B 전용 모델이며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고,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개별선택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오브제 냉장고 제품조합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해당세트 구성 제품별 설치위치 포함)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옵션 선택 시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은 옵션 선택 시 삭제되는 기본 설치 3구 가스쿡탑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아울러, 주방 상판(엔지니어드 스톤에는 추후 사용성을 위해 가스 연결구가 타공되고 캡으로 마감됩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옵션 선택 시 삭제되는 수납공간(여닫이 도어설치)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옵션 선택 시 가구패널 부착형 또는 미부착형 으로 설치되며 해당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 옵션 선택 시 판매가격은 전용회로와 관련된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 옵션 선택 시 삭제되는 부위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해당품목 판매가격에서 차감하였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일랜드장 내 빌트인 전기오븐 옵션 선택 시 가구 내 배선이 노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 아일랜드장 가구내 배선기구의 설치로 인해 아일랜드장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 아일랜드장 설치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측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아일랜드장에 설치되는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입형 콘센트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일랜드장에 설치되는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입형 콘센트 및 가전 추가옵션인 전기오븐(해당타입) 선택시 아일랜드장내 배선이 노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Ⅱ)·(Ⅲ)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추후(계약 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 (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추가선택품목에 준합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Ⅱ)	우리은행	1005-004-564760	디엘건설 주식회사
추가선택품목(Ⅲ)	하나은행	411-910016-36304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 상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 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Ⅱ)은 시공사(디엘건설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며, 추가선택품목(Ⅲ)는 사업주체(주식회사케이티앤지)에서 공급하는 품목입니다.
※ 추가선택품목(Ⅱ) 및 추가선택품목(Ⅲ)의 납부대금 계좌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설치 공간 및 기본 설치품목의 제약 상 발코니 확장형 계약 세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 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 및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상세 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및「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아파트 공급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는 추가 선택품목 계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단종 후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 시 동급, 동급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 중 시스템에어컨은 3년, 빌트인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쿡탑, 의류관리기) 2년, 붙박이가구는 2년, 엔지니어드 스톤 등은 2년간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는 제외)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기준으로 계획되었으며, 설치 공간 및 기본 설치품목은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개별 유의사항은 품목별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옵션 선택이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에는 기본 설계(확장 기본형)대로 시공됩니다.
- 준공 이후 현관 중문을 개별적으로 설치 시 현관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감지기 미설치로 인해 현관 내 화재 감지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X.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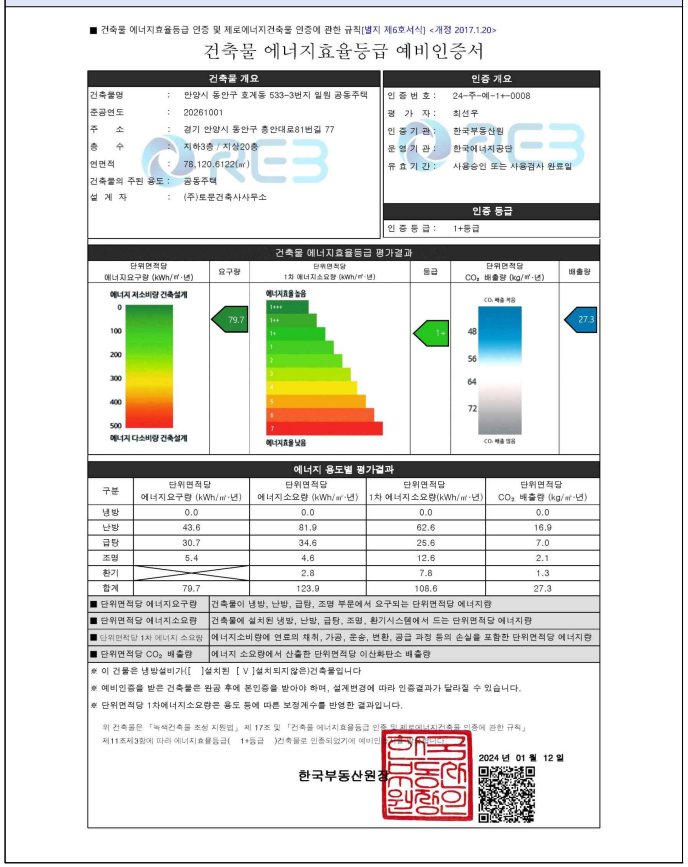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33-3번지 일원 공동주택
준공연도	20261001
주 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81번길 77
층 수	지하3층 / 지상20층
면적	78,120.6122(㎡)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 계 자	(주)토문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 증 번 호	24-주-에-1+-0008
평 가 자	최선우
인 증 기 관	한국부동산원
운 영 기 관	한국에너지공단
유 효 기 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 등급	
인 증 등 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배출량
79.7		1+		27.3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3.6	81.9	62.6	16.9
급탕	30.7	34.6	25.6	7.0
조명	5.4	4.6	12.6	2.1
환기		2.8	7.8	1.3
합계	79.7	123.9	108.6	27.3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교부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한국부동산원장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 분	내진능력(MMI 등급)
메르칼리 등급	Ⅶ-0.1993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 2층, 지하 3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 **학교시설 관련 유의사항**

- 호계동 범내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최초 승인시점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는 다음을 조건으로 적합 협의함.
  - 초등학교 : 호원초등학교 배치 가능(단,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주)케이티앤지'와의 호원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배치 가능)
- 중학교는 동안중학군 내 배치 가능합니다.
- 학교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oeay.kr)

▣ **공통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주택전시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층별 등 상이한 공급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단지 고저차로 인한 방음시설, 옹벽 등 으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누수, 주변 세대 피해 등)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청약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공용홀 및 CG 등 단지배치도 이미지 상 필로티 및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 표기하였으니, 필로티 및 최하층 여부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야간 경관조명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주택전시관 및 분양사무소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문주,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대, D/A(기계·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 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제조사, 규격 및 사양(유리 및 손잡이 포함),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1항3호나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 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구조개선, 시공성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분양 후 변경될 수 있기에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각 동 출입구 게시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추후 소급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주변 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해야하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 개발, 일조권, 조망권, 혐오시설,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지 내부여건

- 계약 전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사업승인 설계도서 및 시방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지 주출입구 외의 단지 내 보행자통로(단지 내 연결통로 포함)의 디자인(선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은 가능하나,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입니다.
-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야간 경관조명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저층세대는 조망과 접근동선거리가 불리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매연,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로 인해 일부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쓰레기분리보관소, 주민공동시설 등)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기계실 전기실 등 각종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 설치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상 층 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녹지구간 내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지상 1~2층(필로티 포함)과 최상층 확장형 세대는 세대 내 방범을 위하여 창측에 방범용 동체 감지기가 설치되며, 기본형 세대는 발코니에 설치됩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환기설비,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야간 경관조명, 이동통신 설비, 엘리오스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는 실 시공 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중계장치는「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 해당없음
  -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지하1층 (101동 통신기기실, 104동 통신기기실)
- 공동주택 공용홀 및 계단실의 설치되는 창은 주동의 형태와 조합에 따라 유무가 발생하며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는 동과 층이 있고 채광·환기창의 설치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홀 설치)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으며,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하부 및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구조에 따라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 수량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벽체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보관소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분리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보관소의 위치는 각 동 주변에 배치되며, 일부 세대 내부에서 쓰레기분리보관소가 보일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출입구 레벨이 상이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이용범위가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로높이는 2.7m이고 택배차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 지하2층, 지하3층의 차로높이는 2.3m이고 택배차량 진입은 불가합니다. 지하주차장 주차면은 2.1m 이상 높이로 계획되어있음을 인

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택배차량 출입을 위해 램프 및 주차장 통로의 유효높이는 2.7m(지하 1층만 해당)으로 시공이 되나, 유효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가스정압기실이 단지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인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주출입구 레벨은 현장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계단 및 램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일부 지상부 주차장 계획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달로그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주동 외벽 마감 하부는 석재이며, 그 외 마감은 수성페인트 도료로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주출입구는 필로티 또는 후면 진입이므로 각 동별 출입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 및 필로티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형태, 출입방식, 개소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세대는 이동이나 단지 내 행위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주의 설치로 인하여 인접한 주동의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및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일부 저층세대는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며, 소방협의에 따라 안전매트 구간의 추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설치 위치는 단지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카 내부, 아파트 지하층·1층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홀, 1층 계단실, 옥상출입구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를 위한 고정IP는 준공 후 4개월간 무상제공되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간사업자로부터 고정IP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옥상층에 설치되며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101동 저층 세대는 단지 주출입구와 인접하여 차량 출입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3동, 104동, 105동 남서측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예정으로 일조 및 경관 침해가 될수 있으니 단지 및 세대 배치 및 주변 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2호라인, 101동 4호라인, 102동 6호라인에는 지붕층에는 호원초등학교의 일조확보를 위한 집광반사판시설이 설치 예정입니다.(집광 반사판시설(엘리오스))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101동 지하층에는 저수조실, 펌프실, 오수펌프실 104동 105동 사이 지하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 포함), 101동 106동 사이에는 근린생활시설용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운전시 소음, 냄새,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발생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101~103동 인근에는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실외기공간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발생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산업센터와 공동주택 부지 경계에 지식산업센터 보강토 옹벽이 시공되며, 보강토 옹벽의 고정을 위한 그리드가 공동주택 부지쪽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조성되는 공공보행통로는 인허가 과정에서 조성된 부분으로 외부인이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부지와 초등학교 사이에 조성되는 공원은 기부채납공원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 공원설계 과정에서 공동주택 부지와 초등학교 사이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보행자 통로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관련 공동주택 주출입구 부분의 도로는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통학 안전을 위한 신호체계 및 안전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및 라인의 경우 엘리베이터 승하차시 세대 현관 및 세대 내부 등이 바로 보여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주방 일부 발코니(다용도실),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직접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외부창호 설치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 – 기본 및 추가 선택품목 포함]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급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콘크리트벽체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블록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주거동의 조합에 따라 발코니 실제 유효 면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발코니 내부 추가 단열재 설치 등)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일반사항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 디자인, 외부 조명시설, 옹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건축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세대VR,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또는 가전제품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 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 계산상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동 배치 특성에 따라 일부 동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시공됩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샤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모형 및 홍보물, 조감도와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식재되는 나무의 종류 및 배치, 수량 등은 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놀이시설물을 포함한 단지 내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는 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 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 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내 단지 및 세대 도면이 비치되어 있사오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공사 진행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다목적실(CS센터)을 101동 하부 지하1층에 설치하였습니다. 다목적실은 입주후 26개월간 무상으로 CS센터로 사용 예정이며 민원 관련 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활용기간 이후 시설은 입주자의 부대시설(다목적실)로 사용 예정입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다르게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단지내 팬룸 근처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등의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반여건에 따른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의 지정 및 기초형식의 변경 또는 보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조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면 크기 및 철근배근 조정 등의 구조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2개의 변경사항은 구조기술사의 구조확인 및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후 변경되는 사항이며, 향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관계법에 의거하여 입주자 동의 절차를 감리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를 위한 고정IP는 준공후 4개월간 무상제공되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간사업자로부터 고정IP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 101동 지하층에는 저수조실, 펌프실, 오수펌프실 104동 105동 사이 지하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 포함), 101동 106동 사이에는 근린생활시설용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운전시 소음, 냄새,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발생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101동, 102동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 103동 하부에는 관리사무소, 102동, 103동 인근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단지내 중심부에 어린이집,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위치하여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를 위한 고정IP는 준공후 4개월간 무상제공되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간사업자로부터 고정IP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2. 단지배치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차량 동선 등),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곽의 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 등의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

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는 단지외 도로와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및 동측 대로변에 준공시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소재), 디자인, 높이 및 길이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안등 및 CCTV 위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6동 주변 어린이공원과 단지의 연결 구간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6동 주변 어린이공원의 마감, 형태,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5동, 106동 북서측 단지내 도로는 지식산업센터부터 북측의 공원으로 연결되는 지구단위계획상 공공보행 통로입니다. 공공보행 통로는 공공에게 개방되어 사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여 이에 따른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하시기전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모형도 및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과 104동~106동 인근에는 펌프실·저수조실·전기실·발전기실(공동주택, 근생용 별도) 등의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가 지상에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소음, 냄새,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3. 아파트 주동
- 실외 어린이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쓰레기분리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냄새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환기설비,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야간 경관조명,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하층에는 제연휀룸이 설치되어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의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원은 공용전기 요금이 부과됩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색채, 입면(창호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 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에 어린이집/주민공동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외 노출 복도에는 소방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의 오배수 배관은 실외 노출 복도 천정속 공간에 설치되며 유지관리를 위한 천정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1층, 2층 이상(기준층)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주거동의 공용홀(승강기홀) 창호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동 최상층은 승강기 기계실,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태양광 판넬, TV 및 웨더스테이션 안테나, 이동통신용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 주동 저층부는 마감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측벽 석재 디자인은 공사시 입주자 동의없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101동 3,4,5호라인 후면에 옥외 승강기가 설치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2호코어(3호세대 조합)의 계단실 창호는 다른 계단실과 달리 0.5㎡미만의 창호가 설치되어 조망 및 환기의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진동, 냄새 등으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2동 2호코어(79A+59A조합)의 계단실 창호는 다른 계단실과 달리 0.5㎡미만의 창호가 설치되어 조망 및 환기의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 하부(지하1층)에 주민공동시설의 대부분(피트니스, 골프연습장등)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6호라인(84B형) 하부에는 비상동선이 설치되어 비상동선 사용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1호라인 우측에 외부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시야의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103동 2호라인 후면에는 배기용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3,4호라인 코어(계단실, 엘리베이터) 후면에는 근생용 실외기실이 설치 되어 소음, 진동, 냄새,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2,3호라인 전면에 발전기실용 급배기 DA가, 후면에는 제연 DA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5동 1,2호라인 계단실 전면에 전기실용 급배기 DA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105동, 106동은 어린이집과 근접하여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06동은 별도의 재활용 수거시설이 없으며 101동 또는 105동의 재활용 수거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 지하1층 램프 후면에 세대창고 공간이 설치됩니다. 당사에서는 창고 공간만 제공합니다.
- 101동, 102동, 104동 입면 일부에는 커튼월룩이 시공될 예정이며 시공 위치와 면적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튼월룩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빛 반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를 모형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동 저층부 석재의 석종은 자재의 수급 및 해당 설치 시점에 따라 동급 유사 색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지하층에는 저수조실, 펌프실, 오수펌프실 104동 105동 사이 지하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 포함), 101동 106동 사이에는 근린생활시설용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운전시 소음, 냄새,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발생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101동, 102동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이, 103동 하부에는 관리사무소, 102동, 103동 인근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단지내 중심부에 어린이집, 경로당, 티하우스(그린카페)가 위치하여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하층에 제연휀룸이 설치되어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하부에는 배수를 위한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류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지상 스탑수에 따라 상이하며, 15층 이하는 90m/min, 20층 이하는 105m/min, 옥외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60m/min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승강기 운행 시 인접세대에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105동 사이 지하층의 전기실(발전기실 포함)과, 101동 106동 사이 근린생활시설용 발전기실에는 전기실 · 발전기실 등의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가 지상에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소음, 냄새,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04동 105동 사이 지하층의 전기실(발전기실 포함)과, 101동 106동 사이 근린생활시설용 발전기실에는 전기안전공사 연 1회 및 관리사무소의 비정기적 발전기의 시운전시 D.A을 통한 매연발생 및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안테나는 103동,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는 101동 상부에 설치예정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단위세대

- 주택전시관 단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각종 창호(유리포함) 및 부속 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욕조,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2.3M이며 본 공사시 세대내 천장높이는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택형별 각 실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환기디퓨져, 공기질센서(1개소 설치),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와 사양, 설치개소는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의 전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전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전기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 월패드, 콘센트 및 스위치, 소방시설,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하향식피난구/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공간(해당타입)/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에 설치된 외부창호(유리포함) 및 내부분합문은 주택전시관용입니다.
- 발코니 확장시 외부창호는 이중창호 및 단창[PL창]이 설치되며,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열림방향, 유리난간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단, 비확장시 외부골조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은 그릴창으로 설치됩니다.
-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비확장 세대는 주방과 면한 발코니에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고, 방과 거실과 면한 발코니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는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형은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세대분전반 내 차단기 수량이 감소하며, 등기구의 수량, 램프 및 배선기구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옵션 선택 시),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 경량벽체는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조적 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외부창호 설치 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발코니(해당타입) 창호는 별도의 금속재 투시형 난간은 설치되지 않으며, 창호 일체형 유리난간이 설치됩니다. 본 창호의 성적은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관류율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사용 시 원활한 에어컨 동작을 위해 실외기실에 있는 그릴창 및 방충망을 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평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현장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텐박스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 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다르게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렌지후드 좌,우 상부장에는 주방자동식소화장치 설치공간입니다.
- 입주자가 개별 소유하고 있는 대용량 가전기기 사용시 세대 전기 용량과 맞 차단기 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전기관련 공사를 해야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동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설비의 배관 및 배선도 설치되지 않습니다. 계약 후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입주자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및 가구가 용량/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일부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환기장비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환기장비 설치 등으로 인하여 소음발생 및 발코니 천장높이 및 문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도면의 각 세대 주방 창호 크기는 창호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대 내측에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혀져 시공되므로 세대 내부에서는 창호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하부가 필로티인 세대를 제외한 2층 이상 모든 세대의 발코니 또는 하향식피난구 바닥에 설치되며, 2층 이상의 모든 세대와 일부 1층세대의 발코니 또는 하향식피난구에는 상부 세대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월패드의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립세대에 설치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류의 제품은 기능과 미관 향상을 위해 색상, 디자인, 버튼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침실의 콘센트 중 실별 1개소는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됩니다.
- 주방 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팸플릿에 적용된 마감 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단열공사 외 환기 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없음)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목재문, 가구 및 디자인 월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재 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타일,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욕실벽 락패널, 거실 세라믹패널, 복도 시그니월 패널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창 프레임의 규격이나 소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시트 패널 마감 관련 본공사 시 고정방법이 변경되어 사이버주택전시관 또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 및 일반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추후 인테리어 등으로 인하여 철거 시 미시공된 부위에 대한 추가 시공은 불가능합니다.
- 주방 상판 및 벽체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주택형 주방벽 및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조인트 부분은 코킹으로 처리되며 시간 경과에 따른 이색 및 오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전 주택형 주방벽 및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은 물갈기 광택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관, 현관팬트리,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대피공간(해당타입) 바닥타일 패턴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의 컬러나 무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처리에 대한 보수 등 해당 자재 교체시 기존 시공 마감재와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함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과 디자인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 치수 및 인조대리석 선반의 마감 디테일(치수,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장, 세면기 하부장 등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 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에어컨 배관을 위해 거실에 스탠드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박스, 각 침실에는 벽부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박스, 실외기실에 실외기 연결을 위한 냉매박스가 설치되며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발코니 또는 하향식 피난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화재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해당세대, 하부1개 층 세대는 개폐시 알림경보가 울리게 됨)
-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마감 등)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옵션 및 평면 선택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벽패널 및 마감에 의한 줄눈나누기,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통신단자함은 59A형-신발장 내부에, 74A/74B/79A/84A/84B/84C/98A-현관팬트리 내부에 매입설치(커버노출)되며 이로 인해 신발장 및 팬트리 내부의 시스템선반 구성이 일부 변경되거나 거실 복도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인해 전기분전함은 침실1(안방)벽에 매입설치(커버노출)되며 이로 인해 침실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고 가구 배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설치위치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현관 인근에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되며, 일괄소등 스위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본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 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추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다용도실 빨래건조대, 거실 벽걸이 TV등의 설치 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내 벽체에는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 등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보통 수직 형성)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을 지양해야 하며, 벽체 및 배관 파손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일랜드장(확장기본 제공)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동 및 철거를 지양하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과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장, 세면기 하부장 등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및 실외기실 배수방식이 상이하게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택형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다용도실,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실외기실, 발코니, 하향식피난구 등의 단차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현관 디딤석은 엔지니어드스톤의 특성상 무늬, 색깔 등이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아울러 이음면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세대내 입상관, 디퓨져, 수전,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등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택전시관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또한 본 공사시 설치위치, 사양 및 디자인,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등기구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된 세대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의 위치는 본공사와는 무관하며, 법적 설치기준에 의거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됩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적용될 가전기기(추가선택품목)의 모델사양은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세대창호(외부창호, 내부 분합문 및 목창호,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도어, 하향식피난구 도어, 대피공간 도어(해당타입), 발코니도어 등)의 사양 및 손잡이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선반(추가선택품목 포함)의 제조사, 디자인, 시공디테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에 설치된 하드웨어(손잡이, 경첩, 스토퍼, 손끼임 방지장치 등)는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색상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 분전함, 월패드, 세대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거실 및 침실등에 설치되는 커텐박스의 위치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피난구 및 발코니의 벽부형 조명기구는 하향식 피난구 열림(개폐) 방향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장 후면은 별도의 락패널 마감이 없습니다.
- 본 공사시 욕조 하부에는 마감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냉장고/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전기오븐/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주방스마트TV 등)은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추가선택품목 포함), 주방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 욕실가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후면, 천장, 측면, 바닥면은 최종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 공간은 세탁기 및 건조기 사양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붙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이 소유하신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기타 소형가전 등 가전사양 및 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각종홍보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욕실선반, 손빨래하부장(추가선택품목)), 엔지니어드스톤류(현관디딤판, 화장대 상판, 주방 벽/상판 등)는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처리에 대한 보수 등 해당 자재 교체시 기존 시공 마감재와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와 기타층 세대간 천장속 공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발코니 배수 입상관이 시야확보 및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세대별 입상관 위치도 상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창고 및 다용도실에는 결로 방지용 코일이 설치되는 세대가 있으니 내부 물품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우물천장의 깊이와 크기는 본 공사시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 등기구 설치 등으로 인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다용도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각종 패널류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현관팬트리, 다용도실, 실외기실, 발코니, 하향식피난구, 대피공간 등 도장으로 마감되는 부위의 벽체하부에 오염방지 도장이 시공되며, 도장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에 도배홈이 설치되며(일부 미설치 부위 제외),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욕실, 현관(현관 팬트리), 실외기실, 다용도실 바닥의 타일은 줄눈색상 및 패턴(나누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타입 단위세대 내 거실 세라믹패널 마감부위의 경우 본 공사시 나누기 및 상세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옵션 포함)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주택전시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발코니, 대피공간,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주택전시관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발코니, 다용도실 점검구 및 욕실 천장재(몰딩 포함)의 점검구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벽 락패널 줄눈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2(부부욕실)에 설치되는 샤워부스는 접합유리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관계에 따라 디자인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도어 하부에 설치되는 인조대리석 도어씰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세라믹패널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분할,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타커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가구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외부창호 유리는 주택전시관용임)
- 주방가구 상판의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은 1면 착색프레임이 설치되고 내부면은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마감과 다소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외부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주택전시관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유리난간 포함)과 발코니 외부창호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가동시 인접한 실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사용상 간섭을 줄이기 위해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난간대(유리난간 포함)의 형태, 나누기, 고정방식, 색상,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디테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짝수층과 홀수층 위치가 교차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제조사,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B 타입은 별도의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지 않고, 대피공간으로 구성됩니다. (대피공간의 문은 방화문으로 적용됩니다.)
- 84B 타입의 대피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의거하여 대피공간 면적이 확보 되었습니다.

(대피공간 내부에는 하향식피난 사다리 공간과 다르게 별도의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입주자의 사용유형에 따라 대피공간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화재나 긴급상황시 대피하는 공간으로 창고나 수납의 용도로는 사용 불가합니다.
-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장비는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본 공사시 덕트가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류)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실외기실 바닥 및 천장 높이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설치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내 세탁수전, 배수구 등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 천장에 설비배관 및 렌지후드용 팬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설치위치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 점검구의 크기 및 위치, 마감자재 사양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 도어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어 개폐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현관팬트리에는 결로 방지용 코일이 설치(수납공간 제외)되며, 내부 물품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다용도실의 바닥 단 차이(레벨차이)는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시 실외기실에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 공사 미 선택 세대의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개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사용 시 원활한 에어컨 동작을 위해 실외기실에 있는 그릴 창 및 방충망을 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내 입상배관 및 배수구 등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 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에어컨 실외기실내 환기장비, 환기조절기, 조명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와 사양은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창호는 PVC재질로 설치되며,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손잡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모든 목창호(욕실 포함)의 하드웨어(경첩, 손잡이, 스토퍼 등)는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창호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크기 및 위치, 설치개소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기계환기설비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됩니다. 아울러 자동식 소화기 조작부가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욕조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현관 부위에 설치된 일괄소등 스위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거실에 설치된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세대 내에 설치된 콘센트중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는 2구 중 1구(거실에 한하여 4구 중 1구)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제공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환기디퓨져, 조명기구, 콘센트, 배수구, 위생기구, 수전, 악세사리류 등의 위치와 사양은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및 다용도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식탁용 팬던트 예비 스위치만 제공되며, 별도의 주방 식탁용 팬던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 침실1만 기본으로 냉매배관이 제공되며, 침실2,3(해당 타입 알파공간 포함)에 일반형 에어컨을 설치시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슬리브, 냉매배관, 드레인관, 실외기

위치 선정)은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모든 세대는 실외기실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급수급탕분배기, 온수분배기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시 제공되는 확장 기본형 지급품목은 평면의 형태 및 설치공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주택형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계약전 주택전시관에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 소유하고 있는 대용량 가전기기 사용시 세대 전기 용량 및 차단기 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전기관련 공사를 해야 합니다.
- 주택형별 아일랜드장에 설치되는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입형 콘센트는 본 공사시 설치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 ,대피공간, 다용도실, 발코니 도어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도어 재질상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98A타입 알파공간 슬라이딩 도어(유리포함)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어 특성상 기밀성이 떨어지며, 소음,외풍,먼지 등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욕실에는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온도조절기 설치 없이 거실 또는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욕실 난방 제외 구간 : 욕조 하부, 샤워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정수기 및 음식물 처리기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발코니 배수 입상관이 시야확보 및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세대별 입상관 위치도 상이 합니다.
- 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및 실외기실 배수방식이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후드용 배기팬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후드 가동 시 실내 음압이 형성될 수 있으니 창문을 열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세대 내 에어컨 배관을 위해 거실에 스탠드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박스, 각 침실에는 벽부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박스, 실외기실에 실외기 연결을 위한 냉매박스가 설치되며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에 배관 및 장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다용도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다용도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본 시공 시 설치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현관팬트리 바닥에 난방코일이(수납공간 제외) 시공될 예정이며(59A타입 제외), 별도의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으니 내부 물품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고 배관 간격은 침실과 다를 수 있으며, 별도의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욕실 난방 제외 구간 : 욕조 하부, 샤워실)
- 단위세대 형태에 따라 다용도실에는 결로 방지용 코일이 설치될 예정이며, 내부 물품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주방TV 및 욕실 스피커폰의 사양, 버튼 구성, 디자인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설치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별 마감이 상이한 관계로 틈새처리를 위한 코킹시공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별 마감에 있어 수직수평에 대한 허용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세대현관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되며, 이는 소방관련 사항으로 하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단위세대별 전기 공급에 대한 전압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가의 가전제품의 경우 필히 전압에 대한 부분을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지하 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전기 및 기계 설비와 관련한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차로의 너비는 6.0~7.0m,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 2.7m(지하1층 해당)이고, 주차면은 2.1m 이상입니다.
- 지하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전체 690대 중 공동주택 678대, 근린생활시설 12대(조업 주차공간 별도구획)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인허가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101동, 102동 사이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동출입구 주변 주차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근생)이 위치하며 근생지붕에 실외기가 설치됩니다. 근생 실외기로 인한 소음 및 오염이 예상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지붕 구조물에 의해서 저층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구획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부출입구와 근접하여 보행자와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휀룸 및 기전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주 형태, 위치(기둥위치 포함),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실내 피트니스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주거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질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상가외부 가로수로 인한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GX룸) 등이며 내부시설물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관리사무소 제외)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주민운동시설 제외)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 외부에 볼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휀스, 각종게시판, 버스 쉘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및 지상주차장 주변부 녹지대는 면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용복도의 사용시간은 단지 내 상가협의회(가칭)와 단지내주민협의회(가칭)의 협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일반주차 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경형 주차구역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주차공간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및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공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관련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충전기 6개소, 완속충전기 29개소, 이동형충전기용 콘센트(과금형) 13개소가 설치되며 설치장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지하3층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습니다)
- 무인택배 시스템은 세대수의 약 20%가 지하주차장 내 동별로 설치됩니다. (냉동, 냉장함 제외)
- 무인택배 시스템은 관리사무소 내부서버로 운영됩니다. 향후 원격관리 시스템(관제센타 통화, 문자발송, 카드결제 등)으로 운영할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서비스 비용 및 기간사업자로부터 고정IP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전기, 통신, 소방용 배관 및 트레이가 노출되어 시공되며, 지하주차장 내 공용공간을 공유하여 설치되므로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출입 문주는 101동 상부 1개소만 설치됩니다. 반드시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02동, 103동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 입점 점포의 성격에 따라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의 지붕공간은 주민 전체의 공유 공간으로 개인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101동 하부(지하2층,지하3층)에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저수조가 위치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하부(지하1층,지하2층)에는 발전기실이 위치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저수조실,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으며,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D/A 및 기전실에 인접한 101동, 104동의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CG)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아울러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역(가칭/예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30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2023.12.29.)'을 참고하여 표시한 것으로 향후 이와 관련한 사업주체, 정부기관, 지차체 등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역의 명칭, 역의 위치 및 출입구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GTX-C노선 금정역(가칭/예정)은 개통추진 예정이며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GTX 현황 및 노선도')를 참고하였으나 GTX-C노선 사업주체, 정부기관, 지차체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곶~판교선(예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57호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문'을 참고하였으나 사업주체, 정부기관, 지차체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인근 안양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어 생활환경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계약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 주택전시관은 59A, 84A 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단지배치에 따라 주택전시관과 달리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PVC창호,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고 동급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추가 선택품목(설치사항, 규격),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품목(전

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주택전시관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건립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시공부분, 단지모형,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CG, 세대VR 또는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단위세대 VR(사이버 주택전시관) 창호 외부에 보이는 전경은 이미지일 뿐이며, 본 전경 이미지는 주택형별 동호라인의 조망향에 따라 준공 후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단위세대 VR에 표현되지 않은 각종 배선기구류(스위치, 온도조절기, 콘센트 등) 및 설비 배관류(가스배관, 계량기, 입상배관, 수전 등), 세대 분전함, 각종 점검구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도어폰, 주방TV, 욕실폰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 내 분전함, 통신단자함, 월패드의 설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서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또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상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액자 등 포함), 이동식 가구, 벽장식 패널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전시용 조명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미포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의류관리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실 시공 시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전시관 외부창호에 설치된 유리도 주택전시관용으로 실 시공 시 창호 유리는 사업승인도서에 적합한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침실 및 욕실 도어에 설치된 하드웨어(손잡이, 경첩, 도어스토퍼)는 실 시공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는 주택전시관용 소방설비입니다.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환기 유니트, 환기 디퓨져, 온도 조절기 및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환기구(급/배기용), 소방 감지기는 주택전시관 가시설물로서 실 시공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실 시공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텐박스, PL창호, 주방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주택전시관용 소방시설임)
- 단위세대 실별 가구(붙박이장, 시스템가구, 기타 수납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실별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 및 주택전시관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 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주변의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된 CCTV, 소화기는 주택전시관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등기구 조도량[lu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실 시공 시 KS조도 기준 동급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직부등 및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실 시공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침실 POP에 명기된 실 치수는 발코니 확장 기본형 평면도의 안목치수 기준으로 추가 품목 선택 시 가구 및 마감재 두께에 따라 내부치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삭하였으며, 실측치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현관입구에 설치된 금속 프레임은 주택전시관 연출용 마감재입니다. 실 시공 시 방화문틀 및 방화문이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 내 다용도실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 건조기 설치사례로 시공 미포함 항목이며, 가스식 건조기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보일러는 실 시공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2019년 8월 20일부터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건축	소방	전기	통신
회사명	㈜지앤에이건축사사무소	㈜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	㈜한성기술단	주식회사 지티엘이엔지
감리금액	2,285,146,514원	108,436,560원	554,663,500원	137,984,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서 기간
제06712024-101-0000100호	118,983,6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 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입주 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날짜를 지정·통보할 예정이며, 사전방문일자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 및 유의사항
- 입주예정일 : 2026년 10월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납기일이 미도래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됨)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 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시행 및 시공사는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시행 및 시공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입주 시 세대 물청소 등의 사유로 통수 및 동파방지 사전난방이 진행되어 가스 사용량이 발생될 수 있으며, 분양세대 중 입주기한 내 입주세대는 입주개시당일 이전까지, 입주지정기한 내 입주하지 못한 세대는 입주지정일 당일까지 사전난방 관리가 진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동파방지 사전난방관리 및 가스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키불출 세대는 키불출일 당일을 입주일로 간주하여 난방관리를 종료하고, 이후 발생하는 가스비용 및 관리는 키불출세대 부담으로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주민카페, 티하우스(그린카페), 어린이놀이터, 맘스스테이션, 피트니스센터, 락커룸 및 샤워실, 스크린골프, 실내골프연습장, GX룸, 유아놀이터 등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디엘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60111-0067804	110111-0163115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구월동)

▣ 시공회사

- 시공사인 디엘건설 주식회사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가 아니고 시공자로서 참여합니다. 디엘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자의 지위에서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 관련 민원업무만 담당하며, 분양관련 민원업무는 사업주체(사업시행자/위탁자)가 담당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주소 : https://dlcon-apt.co.kr

▣ 주택전시관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25

▣ 분양문의 : ☎ 031-341-5333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dlcon-apt.co.kr)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